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47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:서영교・인재근・이형석

김영배 · 양경숙 · 윤준병

김민석 • 이정문 • 한병도

박홍근 · 양정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·작성·배포할 수 있음.

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,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, 제3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정치 관여 금지)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.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 - 2.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,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 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 - 3.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 - 4.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

에 관여하는 행위

- 5.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(告知)하는 행위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,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 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8조의2(정치 관여 금지) ① 경 |
| | 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|
| | 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 |
| | 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|
| | <u>된다.</u> |
| |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 |
| |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|
| |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|
| | 한다. |
| | 1.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|
| |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 |
| | 해하는 행위 |
| | 2.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 |
| | 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 |
| | 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|
| | 유포하거나, 그러한 여론을 |
| |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|
| | 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|
| |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|
| |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|
| | <u>행위</u> |
| | 3.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|
| | 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 |

제31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③ 경찰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 무원법」 제65조를 위반한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,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 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하는 행위

- 4.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 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
- 5.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(告知)하는 행위제31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조의 2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 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,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